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 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11.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99. 11. 22

다. 상정일자 : '99. 11. 22

(제8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노 양 현

나. 개정사유

-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종합 지원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 방안을 확대 코자 함.

다. 주요 내용

-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를 5년 동안은 전액 면제, 그다음 3년동안은 50% 경감'
- 감면시한 : 기업이전 효과가 초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02년말까지 한시 적용

3.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6. 29 「기어의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경제정책 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키 위해 우리군의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군 관내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된다는 점에서 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 그러나 기업의 유치과정에서 환경 친화적인 문제와 주민소득 및 고용창출 등 우리지역과의 보완적인 상관관계등을 고려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의 세밀한 준비와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 형식적인 측면에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과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쳤으며 상위관련 법규등의 저촉여부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효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부 : 화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9. 11.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종합 지원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코자 함.

2. 주요골자

-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 동안은 전액면제, 그다음 3년동안은 50% 경감
- 감면시한 :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02년말까지 한시 적용

3. 관련법령 및 근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화순군세 감면조례 신설 (제22조의 5 신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지역발전등을 위한 감면'에 제22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때 다만,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공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서 이전하기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 한때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22조의5(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 무소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p> <p>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 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 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 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 한다.</p> <p>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p> <p>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 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 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때 다만, 합병, 분할 또는</p>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공장 또는 공사를 이전하여 감면 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 에서 이전 하기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때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 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 의 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 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 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 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 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